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- 1. 소관기관 및 부서: 경상북도 건설도시국
- 2. 심사경과
 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3년 2월 24일, 이우청 의원 외 11명
 - 나. 회부일자: 2023년 2월 28일
 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(2023년 3월 10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- 3. 제안설명의 요지
 - 가. 제안설명자: 이우청 의원
 - 나. 제안이유
 - 도내 시장・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상향 또는 제외함으로써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, 도 건축 위원회 위원 위촉수를 확대하여 위원회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 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O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외 대상규정 신설(안 제2조의3)
- O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수와 중복위촉에 대한 사항을 개정(안 제4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황보 석)

가. 조례개정 목적

○ 도내 시장·군수의 건축허가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상향하고 사업계획인가를 받는 건축물을 제외함으로써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, 도에서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의 위촉 위원수를 확대하여 위원회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O 법 단서¹⁾에 따라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외 대상 규정을 신설(안 제2조의3)
 - 층수가 30층미만이고,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
 -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²⁾ 제29조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건축물은 제외
- O 건축위원회 위원수와 중복 위촉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(안 제4조)
 -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이상 70명이하를 40명

¹⁾ 건축법 제11조 2항 1호

시장·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, 규모 및 형채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
^{1.}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. 다만, 도시환경,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

²⁾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한 법

- 이상 100명이하로 개정하여 위원수 확대
- 위원 중복위촉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³⁾를 따름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「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경상북도내에서 시장・군수가 추진하는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 허가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30층이상으로 상향하고,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건축물을 제외함으로써 시장・군수의 건축행정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며,
- 40명에서 70명이하인 건축위원회의 위촉 위원수를 40명에서 100명이하로 개정함으로써, 분야별 전문가 위촉수를 확대하여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,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중복위촉 및 과도한 연임을 방지함으로써 투명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 하는 것으로.
- 본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,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개정취지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
³⁾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

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,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참고 1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및 현황

□ 건축위원회 안건 상정 등 심의절차

심의신청 (25일전) ► 심의건 검토 (15일전) ► 심의 상정 (2일전) ► 위원회개최 (당일) ► (10일내)

► 심의결과반영 (30일내) ► 건축허가

- * 건축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 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
 - O 사전승인 심의 소요기간 최소 60일 이상 소요
 - 사전승인 심의 최소 30일이상 소요
 -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견 반영 등 추가 30일이상 소요

□ 도지사 사전승인 연도별 현황

구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비고
건수	26건	11건	7건	8건	7건	34건	38건	

참고 2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현황

□ 건축위원회 현황

O 구 성 : 66명(건축계획·설계 등 9개 전문분야별 구성)

- 근 거 :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4조, 제6조

- 구 성 : 66명(당연직 3, 위촉직 63)

- 임 기 : 2023. 1. 20. ~ 2026. 1. 19.(3년간)

- 기 능 : 건축허가 전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및 건축관련 심의

- 운 영 : 연간 13회 49건(매년 증가)

- 5. **질의 및 답변 요지**: 생략
- 6. **토론요지**: 없음
- 7. 수정안의 요지: 없음
-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